대외경제장관회의
①호 안건

공 개

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

2024. 10. 17.

관 계 부 처 합 동

< 안건 요약 >

1 추진 배경

□ 주요국은 **천문학적 규모의 R&D 투자***로 확보한 **AI, 반도체** 등 **미래 첨단기술**을 지키기 위해 **국가적 차원의 대응책****을 강화

* '22년 상위 2,500개 기업 R&D 투자액은 1조 2,499억 유로로 전년 대비 12.8% 증가

** (미) 반도체·양자 기술 등 수출통제 대상 지정('24.9), (일) 경제안전보장법 제정('22)

□ 최근 우리 **첨단기술 유출 피해***가 큰 상황으로 **영업비밀 보호****, 특허빅데이터 등 **핵심수단**을 활용한 **기술보호 대책 강화** 필요

* 최근 5년간('20~'24.8) 해외 기술유출 시도 97건, 유출시 피해액은 23조원대 추산

** ① 영업비밀 침해시 손해배상(5배 可)·금지청구, 징역·벌금 가능, ② '24.上 경찰 송치 기술유출사건 죄종 중 70.3%가 영업비밀 유출 → 기술유출 대응 핵심수단

2 현황 진단

□ (유출 현황)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**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비중***이 크며, **유출 수법이 지능화·고도화****되는 양상

* 분야별 유출현황('20~'24.8) : 반도체40건(41%), 디스플레이 18건(19%), 전기전자 6건(6%)

** 연구인력 이직제안, 국내기업 설립·인력고용, 입수합병 후 이전 등을 통해 유출

□ (대응 현황) **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여전히 취약***하며, **대학·공공연의 기술보호 인식·관리도 미흡****('23년 특허청 실태조사)

*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11.4%만 전담부서·담당인력 보유, 유출시 무대응 비율 32.1%

** 대학·공공연의 54.5%만 연구보안 담당조직·인력 보유, 49.0%만 연구부산물 비밀 관리

□ (인프라 현황)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**기술침해 소송의 실효성이 낮고***, 연구인력의 **해외이직도 증가****하는 실정

* 최근 5년간 원고 승소율 : 영업비밀 침해소송 25.6%, 전체 민사소송 55.6%,
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앙값('97~'17) : (한) 0.6억원 Vs (미) 65.7억원

** IMD 두뇌유출 지수는 '21년 24위에서 '23년 36위로 하락(순위 낮을수록 유출위험↑)

3 비전 및 추진 과제

【 비 전 】

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역동경제 견인

< **기술보호** 강화 → **혁신성과** 축적 → **산업경쟁력** 강화 → **역동경제** 실현 >

【 방향 및 목표 】

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를 통한 기술보호 강화

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유출 방지	중소기업 등의 기술유출 대응력 향상	피해구제 강화 등 기술보호 기반 조성

1.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 강화

❶ 특허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

○ (기술유출 방첩) 특허청의 **방첩기관 지정**('24.4)에 따라, **특허빅데이터*** 분석으로 **기술유출 포착 → 방첩기관 공유 및 수사 연계**

* 全세계 5.8억여건으로 全 기술 분야의 글로벌 R&D 동향, 핵심인력, 기술트렌드 등 포함

○ (국가핵심기술 모니터링) 핵심기술 **신규 지정·변경시** 활용 가능한 **특허동향 정보***, **권리이전·인력** 정보 등 제공

* 산업재산정보법 제정·시행('24.8)에 따라,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도 제공 가능

❷ 기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

○ (기술자문 제공) **첩보·수사 단계**에서 **정보·수사기관**의 기술 범죄 성립여부 확인 요청시 **기술유사성 판단*** 결과 제공**('25.上)

* 특허청은 심사·심판관 1,400여명 보유 → 全 기술 분야 기술자문(기밀유지도 가능)

** 법적근거 마련(부경법) : 영업비밀 공지·유사 여부 등 자문 근거 및 비밀누설죄 신설

○ (수사 고도화) **기술경찰의 수사력** 제고를 위해 **출입국 정보** 등 **필요 정보를 관련부처에 요청**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(부경법, '25)

❸ 기술유출 수법 고도화·디지털화 대응 제도정비

○ (기술보호 강화) **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 제재***, **영업비밀 재유출 처벌, 신고포상금制** 등을 부경법에 반영('24.下~'25)

* 브로커의 기술유출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민·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
○ (전자적 기술유출 방지) 해킹 등 **전자적 침입**에 의한 **영업비밀 침해행위**를 **영업비밀 침해 유형**으로 명시(부경법 개정, '25)

2.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

❶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지원

○ (사전예방) 기업 등의 **기술보호 역량제고** 및 **관리체계 구축** 지원

* (중소·중견기업) 국가전략·핵심기술 보유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신설(연 40개社)

* (대학·공공연) 대학·공공연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및 가이드북 마련·제공

○ (사후대응) 피해 중소기업의 **기술유출 인지** 및 **증거 확보** 지원

* (디지털포렌식) 3주간 디지털 증거 수집·분석, (현장진단) 유출진단 보고서 즉시 제공

❷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제도 강화

○ (기술탈취 입증) 거래·교섭시 교환된 **아이디어**(기술정보·경영정보)를 **쉽게 입증**하도록 **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*** 도입('25.上)

* 증거자료의 전자지문 등록 → 증명서 발급 → 원본 인정 추정효 발생

○ (기술탈취 대응) '공익변리사센터'를 **'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'**로 개편하여 **중기 기술탈취 대응 지원** 확대*(발진법 개정, '25.上)

* 영업비밀 피침해 중소기업 대상 민사소송 비용 신규 지원, 법률자문 제공 등

❸ 기술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체계 확대

○ **법원 및 검·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***, **조정-집행 연계**** 등을 통해 **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**의 **기능** 강화

* ('23) 서울중앙, 수원지법 → ('24) 대전·대구·부산지법 등 조정연계 MOU체결 추진

** 피신청인의 의도적인 조정 불응건에 대해 특허청 수사·행정조사로 연계 등

3.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 및 여건 조성

❶ 기술유출·침해 관련 소송법제의 선진화

○ (증거수집) **기술침해 소송**에서의 증거를 원활히 확보하도록 하는 **한국형 증거수집 제도*** 도입(특허법·부경법 순차개정)

* (전문가 사실조사) 법관 지정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·조사
(법정 외 증인신문) 법원직원 주재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
(자료보전명령) 법원이 침해자에게 증거자료를 보전토록 명령

○ (관할집중) 고도의 **기술적 판단**이 요구되는 **기술침해 소송**의 **재판 전문성 제고**를 위해 **소송 관할집중 확대** 추진

* (현행)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·품종보호권 사건에 적용(민사 본안) → (개선) 영업비밀, 산업기술 보호,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확대(민사 가처분·본안 + 형사)

❷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 조성

○ (국내 이직처 확대) 반도체, 이차전지 등 **국가전략기술** 분야 **특허심사관 채용**(135명) 및 **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*** 선정(100여명)

* 우수 숙련기술인을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전수

○ (직무발명 보상) 직무발명 우수기업 **재인증 부담 완화*** 및 **맞춤형 컨설팅 지원** 확대('24년 250회 → '25년 380회 이상)

*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한시 연장

❸ 기술보호·정보보안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

○ 대학·기업·일반인 대상 **영업비밀 보호 교육**을 확대하고, **기술보호**(변리사 등) 및 **정보보안**(정보보호특성화 대학 등) **전문인력** 양성

* 산업기술보호협회·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동으로 영업비밀·산업기술 보호 교육 제공

☞ **기술보호**를 통해, **"산업 경쟁력을 강화"**하고, **혁신 기반의 첨단기술로 성장**하는 **"우리경제의 역동성 발현"** 촉진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현황 진단 ····· 4

Ⅲ. 비전 및 전략 ····· 10

Ⅳ. 추진 과제 ····· 11

1.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 강화 ····· 11

2.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 ····· 16

3.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 및 여건조성 ····· 20

Ⅴ. 추진 일정 ····· 24

Ⅰ. 추진 배경

◇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R&D 투자로 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

○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AI, 반도체 등의 **미래산업 선점**을 위해 **천문학적 규모의 R&D 투자**를 지속하여 **첨단기술 확보**에 매진

* '22년 상위 2,500개 기업 R&D 투자액은 1조 2,499억 유로로 전년 대비 12.8% 증가, 1위는 알파벳(미), 상위 10위에 ICT 기업이 과반수(EU R&D 스코어보드, '23)

* 글로벌 무형자산 투자('08~'23)는 유형자산 투자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증가(WIPO, '23)

◇ 확보한 기술을 지키는 것은 기업, 더 나아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

○ **기술유출**이 기업에 발생하면 **경쟁력 훼손**으로 직결, **존폐위기**까지 이어질 수 있고, **핵심 산업에 집중**되면 **국가적 위기**로도 확산 가능

○ 핵심기술을 보유한 주요국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**기술유출**을 **국가 경제·안보의 중요 문제**로 **인식**하고, **국가적 차원의 대응**을 강화

* (미국) 양자컴퓨팅,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('24.9)
(일본)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상 신설('21) 및 경제안전보장법 제정('22)

◇ 최근 우리 첨단기술 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

○ 최근 5년간('20~'24.8) 적발된 **해외 기술유출 시도만 97건**에 이르며, **유출시 피해액은 23조원대 규모**로 추산(국정원)

-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도 **'21년 이후 지속 증가**하는 추세

* 기술유출범죄처리 건수(대검찰청) : ('21년) 230건 → ('22년) 348건 → ('23년) 379건

○ 최근에는 **11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**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**중국에 첫 추월**당했다는 평가* → **기술유출 증가시 가속화** 우려

* ICT, SW, 소재·나노, 우주·항공 등 11대 분야 '22년 기술 수준 평가('24.2, 과기부) : 미국(100%), 유럽연합(94.7%), 일본(86.4%), 중국(82.6%), 한국(81.5%)

◇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는 기술유출 대응의 핵심수단

< 영업비밀 보호 제도 >

○ 기업은 **비공개 필요성 및 활용가치가 큰 핵심 기술·경영 정보**를 **영업비밀**로 보호 → **기업 경쟁력 유지의 중요수단**으로 활용

* R&D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재산의 종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업비밀 76.1%, 특허 49.4% ('21, 美 국립과학재단(NSF))

○ **영업비밀을 부정취득·사용·누설·유출**하는 경우 **손해배상 및 금지청구, 형사처벌** 등의 제재 가능 → **기술유출 대응 핵심수단**

* 영업비밀 침해시 손해배상(5배 可)·금지청구 및 국외유출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(국내유출시 10년이하, 5억원 이하) 가능(부경법)

* '24.上 경찰 송치 기술유출사건 죄종 중 70.3%가 영업비밀유출(부경법 위반)

< 부정경쟁 방지 제도 >

○ 동 제도는 **건전한 거래·시장질서 규율 기능***을 수행하는 가운데, **아이디어 탈취 행위****도 규율 → **거래·교섭시의 기술유출 대응** 가능

* 상품·영업주체 오인·혼동, 형태모방 등에 대한 민·형사 조치 및 행정조사 가능

** 교섭·거래과정에서 기술적·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(부경법 제2조제1호차목) →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(불이행시 과태료 부과·공표) 가능

◇ 기술유출 대응수단으로서 특허빅데이터의 활용가치도 부각

○ **특허빅데이터**는 전세계의 **기술 동향, 연구자 정보**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분석시 **기술유출 위험영역 도출·탐지** 가능

> * **특허 빅데이터 : 全세계 5.8억여건**의 특허 빅데이터는 **글로벌 R&D 동향 및 기술 내용, 핵심인력(발명자) 정보, 산업·시장 트렌드** 등이 포함

○ **산업재산정보법 제정·시행**('24.8)으로 기술보호를 위한 미공개 특허정보 제공도 가능 → **특허빅데이터 분석**을 위한 **제도적 기반** 확보

☞ **혁신 기반의 첨단기술로 성장**하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**영업비밀 보호** 등을 통한 기술보호 대책 강화 필요

참 고	주요국 정책동향

국가	정책 동향
 (미국)	◈ **국가안보 관점에서 영업비밀 보호·집행 강화 및 기술이전 통제** ■ **(첨단기술 투자신고)** 중국 등 **우려국가가 첨단기술**(반도체, AI 등)에 **투자**할 경우, **재무부에 신고 의무화**('23) * 국방수권법안(NDAA) 개정('23.7) 및 백악관 행정명령 발표('23.8) ■ **(기술유출 대응조직 신설)** 적대국에 의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혁신기술 타격대 출범('23) ■ **(인적교류 제한)** 첨단기술 분야 **中 유학생 비자기간 단축**(5→1년, '18), 중국 군부와 관련된 연구인력의 **입국금지**(1천명 비자취소, '20)
 (중국)	◈ **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수출통제를 강화** ■ **(영업비밀보호)** 영업비밀 **고의침해 시 5배 배상제도**(징벌배상)와 **몰수제도**를 도입하고, 법정배상금도 상향(5→8.5억원, '19) ■ **(수출·투자 제한)** AI·드론 등 **첨단기술의 수출통제**,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·개인의 제재를 위한 **수출통제법 시행**('20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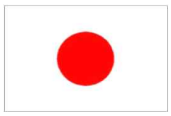 (일본)	◈ **경제안전보장을 위한 조직 신설 등 기술유출 방지 노력 강화** ■ **(영업비밀 보호)** 가해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**영업비밀 사용 추정 규정 도입**('23) ■ **(연구인력 관리)** 유학생의 **비자발급 심사** 강화('21), 정부연구비 지원 대학·연구소의 **외국자금 지원여부 정보공개** 의무화('22) ■ **(안보조직)** 전 부처에 경제안보 지시가 가능한 **경제안보상 신설**('21), 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**경제안전보장법 제정**('22)
 (EU)	◈ **영업비밀 보호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회원국 공동대응 강화** ■ **(외국인투자 규제)** 복수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**외국인 인수합병** 심사 시 **EU 및 관련국과 협의**하는 **제도를 시행**('20) ■ **(연구인력 관리)** 영국은 대학원 유학생 대상, 사이버보안·항공 등 **과목수강시 보안검사**(Security Check) **시행**('20)

Ⅱ. 현황 진단

1 기술유출 현황

◇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

○ (적발 현황) 최근 5년간 **97건 적발**, 그 중 **국가핵심기술건은 31건**

- (연도별 적발 현황) 최근 5년간 **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가 지속 증가중**이며, **'23년은 23건으로 최대 건수** 기록

<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('20~'24.8, 국정원) >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.8	합계
산업기술	17	22	20	23	15	97
국가핵심기술	9	10	4	5	3	31

- (분야별 적발 현황) **반도체, 디스플레이** 등 **첨단산업 분야 유출 비중이 높은 상황**이며, 최근 **반도체 분야 건수 급증***

* 반도체 분야 건수 : ('20) 6건 → ('21) 5건 → ('22) 9건 → ('23) 15건 → ('24.8) 5건

< 산업별 해외 기술유출 적발건수('20~'24.8, 국정원) >

구분	반도체	디스플레이	전기전자 (2차전지 등)	자동차	정보통신	조선	기타	합계
건수	40	18	6	8	3	7	15	97
비율	41%	19%	6%	8%	3%	7%	15%	100%

○ (경찰 수사 현황) **'23년 해외 기술유출 검거**건은 '22년 대비 **83% 증가**(12→22건), **'24년 상반기**는 '23년 상반기 대비 **50% 증가**(8→12건)

- (유출 분야) '24년 상반기 유출 **12건** 중 **반도체** 분야는 **4건**(34%), **디스플레이** 분야는 **3건**(25%)으로 **첨단산업 분야가 상당 비중** 차지

- (유출 수법) '24년 상반기 기술유출 수법은 **전자우편(29%), USB(19%), 외장하드(17%), 클라우드(11%)** 순

◇ 기술유출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·고도화되는 양상

○ (기술유출 수법) 해외이직 제안, 국내기업 설립·고용, 인수합병 후 이전 등 **기술유출 수법**이 다양화

< 관련 기술유출 사례 >

(사례1)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**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목적**으로 **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**하는 등의 기술유출 행위를 한 **피의자를 구속 송치**(24.1월)

(사례2)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,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영입 후 **전기차 배터리 기술** 등 **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검찰송치**(24.1월)

- (연구인력 이직제안) 전형적인 수법으로 **국내 연구 인력에 좋은 조건의 해외이직을 제안**하여 기술유출 시도(사례1)

- (회사설립 및 고용) 외국기업이 **국내 기업을 설립** 후 **인력을 고용**하여 기술 취득, 이 과정에서 **불법적인 기술유출 시도**(사례2)

- (인수합병 후 이전) 외국인이 **국내기업 인수** 후, 인수기업 **기술을 해외로 이전** → 이전 후 **외국기업으로 재유출될 위험** 상존

  * OLED,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인수·합병을 통한 기술유출 의혹이 다수 제기되었으며, 일부기업은 국내기술을 해외 모회사 등으로 이전후 국내에서 철수

◇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해킹을 통한 기술유출 우려 고조

○ 우리나라의 **안보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 정보**가 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등 **사이버 해킹 리스크가 증가**하는 국면

  * 대북 정찰기 '백두·금강' 기술유출... 북한 해킹인 듯('24.8, 언론기사)
    '21.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('21.7, 국회 정보위),

○ 이에 따라, **사이버 해킹**을 통한 **영업비밀 데이터 탈취, 랜섬웨어** 등 **새로운 유형의 기술·지재권 침해 문제** 대두

☞ **우리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조기포착하여 철저히 수사**하고, **유출수법의 고도화·디지털화에 즉각 대응**하는 **제도 마련** 시급

2 기술유출 대응 현황

◇ 중소기업 등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역량 취약

○ (중소기업) 기술 보호를 위한 **사전예방·관리·대응 역량 취약**

- (전담부서·인력·규정) **영업비밀 보유기업** 중 **11.4%만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을 보유**하고 있으며, **47.5%만 관리규정 운영**('23년 실태조사)

- (유출시 대응) 영업비밀 유출시 **민사소송**(가처분 등)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**39.3%**로 **가장 많았으나, 무대응 비율도 32.1%**('23년 실태조사)

- (무대응 사유) **시간·비용**부담(73.7%), **증거수집** 및 피해규모 산출의 어려움(각 42.1%)을 이유로 **무대응**('23년 실태조사)

- (역량 비교)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**대기업 대비 65.2% 수준**

< 기업규모별 기술보호 역량 점수 및 상대지수('23년 중기 실태조사, %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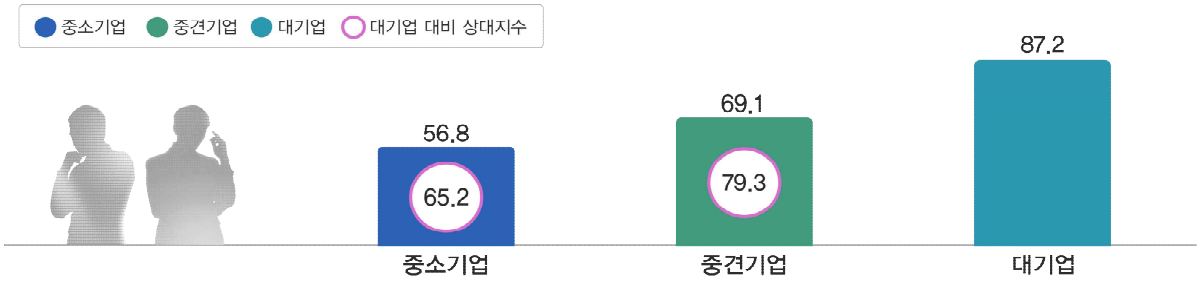

○ (대학·공공연) 특허·논문에 비해 **기술**(영업비밀) **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**하고, **연구비 제약**으로 관리체계 구축에 한계

- 대학·공공연의 **54.5%**만 연구보안 **담당조직·인력 보유**, **49.0%**만 **연구부산물을 비밀로 관리**('23년 실태조사)

< 기술유출 사례 >

◇ (대학) K대학 L교수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**자율주행기술 연구 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**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('21)

◇ (공공연) 정부출연연 소속 A 연구원은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**풍력 블레이드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**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('21)

◇ 거래·교섭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방지조치 미흡

○ (기술탈취 현황) 입찰 등 **사업 거래·교섭** 과정에서 **중소기업**이 제시한 **기술·경영 정보를 탈취**하는 기술탈취 **행위 빈번**

* 아이디어 탈취 신고건수('18~'24.6) : 중소 76건(54.3%), 개인 63건(45%), 중견 1건(0.7%)

○ (거래시 기술보호) 충분한 **보호조치 없이 기술정보를 제공**하는 경향

- **중소기업의 57.3%**가 제3자와의 거래 중 **기술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**으로 조사

< 제3자와의 거래 중 기술보호를 위한 규정수립 여부('23년 중기 실태조사, %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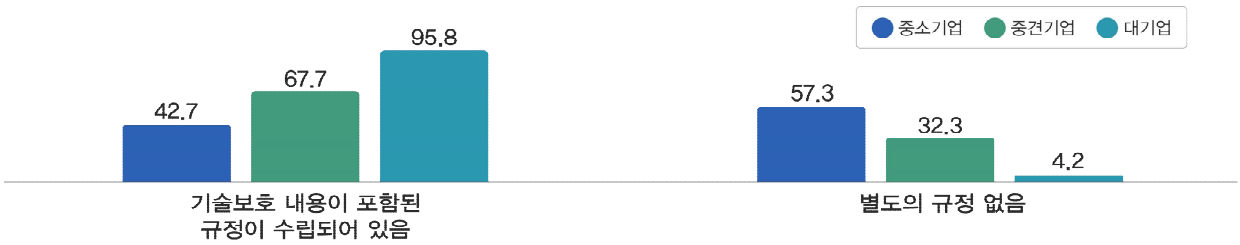

◇ 기술탈취시 분쟁조정으로 빠른 해결이 가능하나, 활용은 미흡

○ (조정 현황) 기술분쟁 발생시 장시간·고비용이 수반되는 소송 대신 **빠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한 '조정' 수요**가 최근 증가

*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건수 : ('19) 45 → ('20) 70 → ('21) 83 → ('22) 76 → ('23) 159 ('19년 대비 250%↑)

○ (이용 현황) 소송 등 **타 분쟁해결 제도와 비교시 활용률은 저조**

< 산업재산권 피해대응 현황('22년 현황조사) >

(단위 : %, 복수응답, 산재권 피침해 경험기업 101개 대상)

변리사 혹은 변호사 상담	항의	내용증명·경고장 발송	라이선스 요구 등 합의·협상 제안	침해한 대상에 대해 무대응
49.5	33.7	39.6	7.9	13.9
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	**민사소송**	**형사고소·고발**	**언론매체 활용**	**기타**
9.9	14.9	5.9	5.0	1.0

☞ 중소기업 **기술탈취 대응역량 제고**를 위한 **지원을 강화**하고, **기술탈취 발생시 빠른 해결을 도모**하는 **조정체계 확대** 필요

3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현황

◇ 기술침해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

○ **증거 확보의 어려움**, 재판 전문성 축적 미흡 등으로 **기술침해 사건의 기소율·승소율**이 일반 사건 대비 **현저히 낮은 상황**

- (낮은 기소율) 최근 5년('18~'22)간 검찰의 **영업비밀 사건 기소율(10.3%)**은 전체 **형사사건 기소율(33.3%)의 약 3분의 1 수준**(검찰연감)

구 분	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계
영업비밀 침해 처리/기소(명)	국내	882 / 76	837 / 78	873 / 108	801/71	733/55	4,126/388
	국외	93 / 15	48 / 11	75 / 15	76/20	59/11	351/72
* 출처 : 검찰연감	소계	975 / 91	885 / 89	948 / 123	877/91	792/66	4,477/460

- (낮은 승소율) 최근 5년간('18~'22) **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승소율*(25.6%)**은 전체 **민사소송 원고 승소율(55.6%)의 1/2 수준****(1심 기준)

* 출처 : 2022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및 2023 사법연감

** 특허침해소송의 원고 승소율(20.3%)은 일반민사소송(55.6%) 대비 약 1/3수준

○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**증거부족, 피해액 산정기준 미비**로 **손해배상액이 매우 낮아**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여건

- (피해액 산정기준 부재) 영업비밀 유출범죄의 양형기준인 **피해액 산정기준·방식이 미정립**되어 엄정한 처벌에 한계

* '15.1~'23.1 기술유출 판결 496건 중 피해액이 판결문에 기입된 사건은 23건(4.6%)에 불과, 23건의 피해액 산정도 유출된 기술가치가 아닌 횡령·절도 금액에 기반

- (낮은 손해배상액) 특허침해 민사소송의 **손해배상액이 주요국 대비 낮고*, 대부분 법관 재량으로 결정** → **해외 원정소송 증가*****

*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앙값('97~'17) : (韓) 0.6억원 vs (美) 65.7억원

** (한) 전체판결의 61%가 재량판단, (미) 재량판단 1% 미만('20년 연구용역 결과)

*** 우리기업간 미국 원정소송이 8건('10~'16) → 16건('17~'23)으로 2배 증가

◇ 연구인력의 해외이직을 막기에는 미흡한 국내 처우수준

○ 기술유출은 **대부분 내부자 소행**(60% 이상*)**에 의해 발생 → 핵심 연구인력 관리 역량**이 **기술유출 예방의 핵심요소**

*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1.3%는 유출피해를 경험, 내부자 유출이 60% 이상 (퇴직자 42.9%, 재직자 17.9%)('23년 특허청 실태조사)

○ 그러나, **인재 관리가 미흡**한 가운데, **해외채용**은 증가하는 실정

- **우리나라는 인재유출에 취약***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, 연구자 **보상강화** 등 **처우개선**을 통한 **해외이직 유인 억제 시급**

* 고학력자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두뇌유출 지수는 '21년 24위에서 '23년 36위로 하락(순위가 낮을수록 유출위험↑)(IMD 세계 인재보고서)

- **첨단기술 확보**를 위한 국가 간 **해외인재**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, **우리 첨단산업**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**해외채용 시도 증가**

* '22년 기준 한국 대학원을 마친 AI 인재의 약 40%가 해외로 나갔으며, 이는 인도,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수준(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)

◇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기업 관심도 낮은 수준

○ (인식 수준) **IMD 지재권 보호 정도 순위**는 **'24년 기준 31위**로 우리나라의 **기술 보호**에 대한 **전반적 인식은 낮은 수준**

연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지재권 보호 정도	39	37	38	36	37	28	**31**

* 주요국 순위 : 스위스(1), 싱가포르(2), 핀란드(3), 덴마크(4), 미국(28), 한국(31), 중국(33)

○ (기업 관심) 국내기업의 **40.3%가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*** 등 **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과 관심도 저조**한 실정

*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('23, 중기부, 표본 : 3,429개 기업)

☞ **기술침해 소송 제도의 선진화, 연구인력 처우개선 및 위상제고, 기술보호 인식제고** 등을 통한 **기술유출 방지 여건 강화** 필요

Ⅲ. 비전 및 전략

【 비 전 】

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역동경제 견인

〈 기술보호 강화 → 혁신성과 축적 → 산업경쟁력 강화 → 역동경제 실현 〉

【 방향 및 목표 】

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를 통한 기술보호 강화

데이터 기반	중소기업 등의	피해구제 강화 등
첨단 기술유출 방지	기술유출 대응력 향상	기술보호 기반 조성

【 전략 및 과제 】

전략 01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 강화

1 특허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

2 기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

3 기술유출 수법 고도화·디지털화 대응 제도정비

전략 02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

1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지원

2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제도 강화

3 기술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체계 확대

전략 03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 및 여건 조성

1 기술유출·침해 관련 소송 법제의 선진화

2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 조성

3 기술보호·정보보안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

Ⅳ. 추진 과제

전략 1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 강화

◈ **(정보분석)**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('24.4)에 따라, 全세계 첨단기술 정보의 보고인 **특허빅데이터 분석**을 통한 **기술유출 탐지·포착**

◈ **(수사강화)** **특허청의 기술전문성** 등 기술유출 관련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이 **유기적으로 결합**된 **기술유출 수사체계** 구축

* 특허청(기술 전문성), 국정원(정보 전문성), 검·경(수사 전문성) 등

◈ **(제도개선)** **기술유출 경로·수법의 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응**하고, **디지털 기반 기술유출을 방지**하기 위한 **선제적 제도개선** 추진

1. 특허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

□ **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유출 방첩 고도화**

○ **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기술, 기술보유기관 등을 특허빅데이터로 분석**하여 **방첩기관과 공유**하는 등 **기술유출 방첩 고도화**

* ('24) 시범실시, 방법론 개발, 신규예산 확보 등 기반 마련 → ('25) 본격 실시

- **해외 유출 위험영역에 대한 특허분석 정보**와 **타 방첩기관 정보를 연계**하는 등 **방첩기관과의 협업**을 통해 **해외 유출 정황 포착**

- 해외 유출 정황을 **기술경찰 수사로 연계**하여 추가 피해 차단

< 특허데이터를 이용한 대외공조 기획수사 절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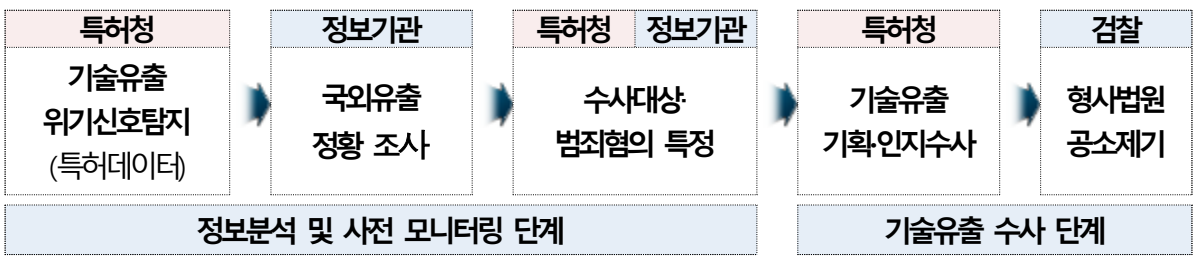

□ 특허빅데이터 기반 국가핵심기술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

○ **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분석** 및 **관계부처 제공**을 강화하여 국가적 중요 기술의 **범정부적 보호체계 고도화**에 활용

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		특허정보 지원 방안
국가핵심기술 지정·변경·해제	←	① 심의 대상 기술의 특허동향 정보 제공
보유기관 파악 및 관리	←	② 최신 특허출원 상세 분석정보 제공 (국가핵심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기관 등)
국가핵심기술 수출 등 관리	←	③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의 권리이전 정보 제공

- (핵심기술 특허정보) 국가핵심기술의 **신규 지정, 변경, 해제** 등 심의 시 활용 가능한 국가핵심기술별 **특허동향 정보** 제공

- (보유기관 정보) 특허정보 지원 **적시성 강화**를 위해 아직 **출원 단계**(등록 전)에 있는 **최신 특허출원**의 **상세 분석정보 제공**

< 근거 : 산업재산정보법 제15조 >

제15조(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) ① 특허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- (권리이전 정보) **핵심기술 수출**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**특허 DB 구축** 및 **권리이전 정보**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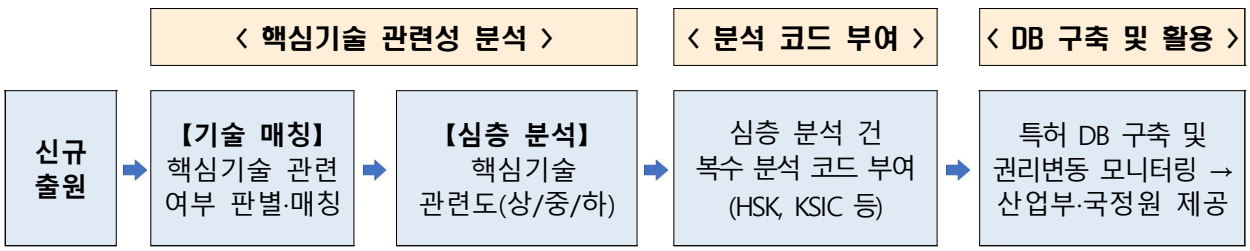

2. 기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

□ 기술전문성 기반 기술유출 수사 체계 구축

○ (추진내용) **기밀유지가 필요한 첩보·수사 단계**에서 기술범죄 성립 여부 확인 요청시 **영업비밀 여부 및 기술유사성 판단** 결과 제공('25.上)

* 기술범죄 수사 및 처벌의 핵심은 기술 간 유사성 판단 → 특허청은 全 기술 분야에 걸쳐 기술 유사성 판단 전문가인 심사·심판관 1,400여명 보유

○ (근거마련) **정보·수사기관 대상 기술자문** 제공을 **제도화**하여 **자문 의뢰 수행을 활성화**하기 위한 **부정경쟁방지법*** **개정** 추진

* 영업비밀 정보의 공지·유사 여부 등 자문 근거 및 비밀누설죄 신설

□ 기술경찰 수사지원 시스템 확대 및 수사역량 강화

○ (정보 연계)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찰의 **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(KICS)**과 **기술경찰 지원 시스템**간 **연계*** 추진

* (기존) 수사서류 포대(1천~1만페이지 상당)를 수사관이 직접 검찰 이송 → (개선) 수사지휘·처분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하여 신속·정확한 수사 지원

○ (기획 수사) 반도체, 이차전지 등 **첨단 전략산업 분야**를 중심으로 영업비밀 유출 **기획·인지 수사 지속 확대**

* 기획·인지수사 입건자(명) : ('20) 4 → ('21) 14 → ('22) 29 → ('23) 97

○ (인력 보강) 기술경찰의 **수사력 강화**를 위한 **인력 증원** 추진('25.上)

□ 기술경찰 수사 정보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○ **기술유출 수사 효율성** 제고를 위해 **출입국 정보, 과세정보, 연금정보** 등 **필요 정보를 관련부처에 요청**하는 근거 마련 추진(부경법, '25)

○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**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 기관***에 **특허청 추가 협의·검토**('25)

* 현재 검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청, 해양경찰청, 행정안전부, 국세청, 관세청, 중앙선관위, 금융위원회, 국가정보원이 해당(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)

3. 기술유출 수법 고도화·디지털화 대응 제도정비

□ 기술유출 수법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정비(부경법 개정, '24.下~'25)

○ (브로커 처벌) **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** 등 **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**에 대해서도 **민·형사적 구제가 가능**하도록 제도 개선

< 관련 사례 >

- (사건) 국가 핵심기술 기술유출 사건에서 헤드헌터 A가 OLED 관련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**이직을 알선하고 고액의 대가를 지급**받은 사실 확인
- (판결) 이직 알선 브로커를 **산업기술보호법,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입증하는 어려워** 직업소개소 미등록 운영 혐의만 적용받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('21.10)

○ (신종수법 대응) **한국 자회사를 통한 영업비밀 해외유출** 등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**제도개선** 추진

- 부정경쟁방지법 상 **영업비밀 재유출***에 대한 **처벌 규정 명확화****

* 국내 피해기업 → 외국기업 한국 법인(국내유출) → 해외 본사(해외 재유출)

** (현행) 불법취득 개입 영업비밀의 취득·사용 처벌 규정만 존재 → (개선) 누설도 포함

○ (신고포상제 도입) 내부자 신고가 효과적인 영업비밀 유출범죄의 특성을 고려, **영업비밀 유출**에 대한 **신고포상금제** 도입 추진

* (현행) 위조상품 유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운영 中 →
(개선) 영업비밀 유출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 신설(부정경쟁방지법)

○ (영업비밀 사용 추정)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**침해자가 입증**하도록 하는 **영업비밀 사용 추정 규정 도입** 추진

□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보호 제도·지원 강화

○ (전자적 기술유출 방지) 해킹·랜섬웨어 등 **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**를 **영업비밀 침해 유형**으로 명시('25)

*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요건 중 '부정한 수단'의 유형으로 기존의 '절취·기망·협박' 외 '전자적 침입'도 추가

○ (사이버해킹 대응) **해킹을 통한 기술유출**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**'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시스템'(C-TAS) 활용 확대**(과기부)

- **정보보호·정보통신 유관 협·단체** 등을 대상으로 **C-TAS*** 홍보·안내

* 기업의 사이버위협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한 위협정보 수집·분석·공유 플랫폼('14~)

- **신속한 정보공유**(상황전파, 중요취약점)를 위한 **SNS**(카카오톡 알림톡) 및 **산업분야**(통신, 보안관제, 호스팅)별 **정보공유 채널** 운영

○ (사이버 부정경쟁행위 제재) 온라인 영업방해 등 **새로운 유형**의 **부정경쟁행위**에 대한 **입법수요** 모니터링 및 개정 검토

* 온·오프라인상에서 경쟁자의 신용저해, 홈페이지 무단 링크 삽입, 경쟁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유포 등 영업방해 행위 등

○ (가이드라인 배포)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제재* 등 **데이터 보호 제도**에 대한 **가이드라인 발간·배포**

*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·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상당량 축적·관리되는 기술상·영업상 정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→ 민·형사, 행정조사 등 제재

□ 기술·지재권 보호 규정의 통상협정 반영 확대

○ (영업비밀 보호) 외국과의 **통상 협상**시 **영업비밀 보호제도 강화** 반영

- 진행 또는 예정인 **FTA 신규 및 개선 협상** 시 지식재산권 챕터에 **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** 제안

* 한-태국 EPA(신규), 한-칠레 FTA(개선) 등에 영업비밀 보호 의무 및 형사처벌 규정 조항(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처벌 등) 제안

○ (부정경쟁 방지) **부정경쟁방지 관련 조항**의 **통상규범** 반영 강화

- **신규·개선 통상 협상***에서 **부정경쟁방지 관련 규정**** 합의를 통해 우리기업이 진출한 **상대국의 보호수준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강화**

* (신규) 한-몽골 EPA, 한-조지아 EPA / (개선) 한-칠레 FTA

** 부정경쟁방지 일반 규정,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조항, 미등록 외관 보호 조항 등

전략 2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

◈ **(역량제고)** 기술유출 발생을 예방하고,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**기술보유 주체의 사전예방·사후대응력 제고**에 중점

◈ **(제도강화)** **사전 거래·교섭 단계에서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 제도**를 구축하고, **기술탈취 발생시의 행정조사 체계** 정비

◈ **(분쟁조정)** 기술유출 관련 분쟁해결이 **최대한 신속히 실효적으로 진행**되도록 **기술분쟁 조정 체계 정비·확대**

1.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지원

□ **중소기업·대학·연구소 대상 기술보호 컨설팅·관리체계 구축 지원**

○ (전략·핵심기술 보호 컨설팅) **국가전략·핵심기술 보유 중소·중견기업***의 **기술보호**를 지원하는 **컨설팅 프로그램 신설**(연 40개社)

*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보유 기관 등에 특허·영업비밀 활용방안, 영업비밀 관리체계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공(2~3일)

< 국가전략·핵심기술 보호전략 컨설팅 주요내용 >

1단계(현황 분석)	2단계(보호체계 구축)	3단계(사후 관리)
■ 보유기술 및 특허 등 분석 ■ 영업비밀 관리현황 등 사전 점검결과 공유 등	■ 특허·영업비밀 활용 기술 보호방안 제시 등 ■ 관리시스템 보급, 표준서식 및 온라인교육 등 제공	■ 지재권융합 기술보호(IP-MIX) 전략 후속컨설팅 ■ 컨설팅 이행점검 및 추가 요청사항 등 지원

○ (단계별 기술 보호 컨설팅) **중소·중견기업 및 대학·연구소** 대상 **기초·심화·IP-MIX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*** 제공

* (기초)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·관리방안 제시, (심화) 제도적·인적·물적 관리 조치 지원, (IP-MIX) 영업비밀·특허 활용 기술보호 전략 제공

○ (대학·공공연 지원) **대학·공공연 특성***에 적합한 **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제작·배포** 및 **대학·공공연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** 마련

* 외국인 학생 연구개발 참여, 국내·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진행 등

○ (부처 연계) **중소기업 기술보호 연계지원**(중기부, 산업부, 특허청, 지자체 등)

- 중기부 등의 **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**한 중소기업에게 **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지원 우대*** 및 **지자체 소송비용 지원사업 연계****

*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,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등 중기부 기술보호 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

□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후대응력 제고

○ (기술유출 증거확보) 중소기업이 전산장비를 통해 **기술 유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도 확보**하도록 **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**

- (디지털 포렌식 지원) 기술유출시 증거수집 및 분석을 위한 **디지털 포렌식** 지원(약 3주 소요) 및 **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** 제공

- (기술유출 현장진단) **전문장비 도입**을 통해 **기술 유출피해 기업 현장**에서 유출증거 탐색·판별 등 **진단보고서 즉시 제공**

- (포렌식 인프라 구축) 디지털포렌식 최신 동향, 실습 등이 포함된 **전문가 교육실시** 및 **업무효율화**를 위한 **전문장비*** 보강

* 검색엔진(dtSearch), 현장분석도구(DFAS Pro) 등을 도입하여 디지털포렌식 업무 효율화

○ (분쟁비용 대출) **지식재산공제**를 통한 **중소기업 기술분쟁 비용 지원**(납입금의 최대 5배)을 위해 **대출사유를 확대***하고 **절차를 간소화****

*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지식재산 관련 특허청 및 기술보증기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부담금을 대출 사유에 포함

** 인터넷을 통해 신속한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원클릭 대출 범위를 기존 경영자금대출에서 지식재산비용대출(납입금 이내)로 확대

○ (교육) 중소기업 대상 **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**(컨설팅) 실시(공정위)

2.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제도 강화

□ 아이디어(기술정보 및 경영정보) 원본증명제도 도입 추진

○ (현황) 사업 관련 **거래·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**가 **아이디어*** **탈취 입증**을 위한 주요 증거이나, 이에 대한 **입증 제도는 부재**

*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(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)

○ (개선) **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**과 **거래·교섭 시 교환한 자료**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**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*** 도입 추진('25.上)

* 지정된 원본증명기관에 증거자료(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, 교환자료 등)의 전자지문 등록 → 입증 필요시 증명서 발급 → 원본 인정 추정효 발생

□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대응 지원 제도 신설·확대

○ (현황) 취약계층·소기업 등 **사회적 약자**의 **지재권 보호를 지원*** 하는 **'공익변리사센터**(지식재산보호원內)**' 운영 中**

*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및 출원·심판 서류작성, 심판 대리 및 침해소송비용 지원 등

○ (개선) 기존 센터를 '**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**(가칭)'로 확대 개편하여 **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대응 지원책** 확대(발명진흥법 개정, '25.上)

- (소송비용 지원) 대기업과 분쟁중인 **영업비밀 피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비용 신규 지원**

- (법률자문·서류작성 지원) 영업비밀 피침해 관련 **법률자문 제공**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 **행정조사 신고서 작성 대리** 지원

□ 아이디어 탈취행위 행정조사 체계 강화

○ (전문성 강화) 기술탈취 등 **중요 이슈·사건 대응**을 위한 **전담조사관제**(기술탈취/형태모방 전담 조사관 지정) 도입 및 **전문 조사관 배치**

○ (운영규정 정비) 부정경쟁행위 **시정명령 도입**(24.8월 시행)에 따른 **운영지침** 신설 및 당사자 등의 **조사자료 열람·복사근거** 마련

3. 기술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체계 확대

□ 법원·검찰 사건 연계조정 체계 확대 및 홍보 강화

○ (연계조정 확대) **법원, 검찰**으로부터 **사건**을 전달받아 **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**가 **조정**하는 **연계조정 체계 확대**

* ('23) 서울중앙, 수원지법 → ('24) 대전·대구·부산지법 등 조정연계 MOU체결 추진

* '23년 조정신청(건) : ('19) 45 → ('20) 70 → ('21) 83 → ('22) 76 → ('23) 159

○ (사무지원 개선)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**유형별 전담 지원팀제***를 도입하여 **맞춤형 조정서비스** 제공('25.上)

* 분쟁조정 사무국內 ①당사자지원팀, ②법원연계지원팀, ③검경연계지원팀 구성

○ (협·단체 연계 홍보) **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기해결**을 위해 벤처기업협회, 이노비즈협회 등 **협회 소속 기업 대상 홍보** 강화

* 설명회 참석·소개, 홍보 영상 송출,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 수단 이용

□ 조정-집행간 사건 연계처리를 통한 조정 실효성 제고

○ (조정-집행 연계) **조정(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) - 집행(특허청 수사·조사)** 연계를 통한 **효과적·유기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**

- (조정→집행) 분쟁의 장기화를 위한 피신청인의 **의도적인 조정 불응**건에 대해, 신청자의 동의하에 **특허청 수사·행정조사로 연계**

* 최근 5년 조정 실패 건(221건) 중 '조정 불응'이 51.9%(114건)

- (집행→조정) 특허·영업비밀 수사* 및 부정경쟁 행정조사 건 중 **당사자 간 합의 의사가 있는 사건**은 **분쟁조정으로 연계**

* '반의사불벌죄'로 당사자 합의 시 '공소권 없음' 송치 가능

○ (자료공유 근거 마련) 조정(분쟁조정사무국) - 집행(부정경쟁조사팀·기술경찰) 간 **자료이관 법적근거**(발명진흥법)**를 마련**하여 **중복조사 최소화**

전략 3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 및 여건 조성

◈ **(소송법제 강화)** 소송에서의 **증거확보 및 피해액 산정** 방식 개선, **법원 관할집중 확대** 등을 통해 **기술유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**

◈ **(해외이직 방지)** **핵심인력 관리역량**은 **기술유출을 예방**하는 중요 요소로 **국내채용 확대, 인센티브 제공** 등 **연구인력 지원** 강화

◈ **(교육·인력양성)** 대학, 기업, 일반인 대상 **기술보호 교육**을 확대하고, **변리사, 보안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**을 통해 **기술보호 저변 확대**

1. 기술유출·침해 관련 소송법제의 선진화

□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

○ (필요성) 해외사례* 및 국내실정 등을 감안하여 **기술침해 소송**에서 침해자 보유 증거를 원활히 확보하도록 하는 **증거수집 제도 도입****

* (美·英) 당사자간 증거교환 등 디스커버리 제도 운영 중, (獨·日)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 운영 중, (中) 행정관청의 사실조사 제도 등 증거수집제도 도입

** 특허침해 소송에 우선 도입(특허법 개정) → 영업비밀 침해 소송까지 확산(부정경쟁방지법 개정)

○ (내용) **전문가 사실조사, 법정 외 증인신문, 자료보전명령**으로 구성

- (전문가 사실조사) 법관이 지정한 **전문가**가 일정한 개시요건 하에 **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·조사**하여 **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**

* 피고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, ①조사개시 결정과정에서 의견진술, ②전문가 제척·기피, ③결과보고서에서 영업비밀 삭제 등 절차 마련

< 전문가 사실조사 흐름도 > : 업계의견 반영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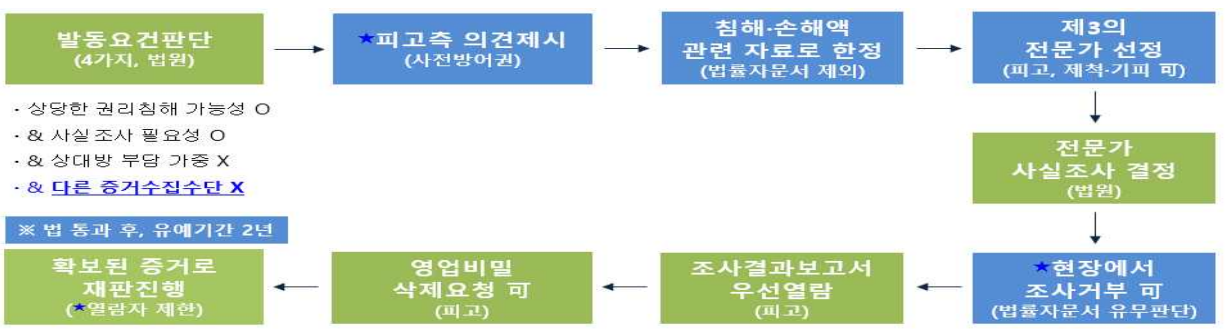

- (법정 외 증인신문) 제출된 **자료의 훼손 및 진위여부 확인**을 위해 **법원 외**에서 **법원직원 주재** 하에 **당사자 간 증인신문** 진행

  *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 외 장소에서 소송의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끼리 신문·녹취하고, 그 결과를 증거로 활용

- (자료보전명령) 증거의 **멸실·훼손 및 사용방해를 방지**하기 위해 법원이 침해자에게 **증거자료를 보전토록 명령**

□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을 위한 법령 정비

○ **영업비밀 침해 소송** 등은 고도의 **기술적 판단**이 요구되는 바, 법원 **전문성 제고**를 위한 **소송 관할집중 도입** 추진(지재위·관계부처)

- (현행) 지재권 침해 사건 중 **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·품종보호권 사건**(민사 본안)에 적용

- (개선) **영업비밀, 산업기술 보호, 부정경쟁행위, 반도체배치설계권** 등 **기술·지재권 침해 사건 전반**(민사 가처분·본안 + 형사)으로 확대

  * IP 소송특위(지식재산위원회)를 통해 법률 개정(안) 마련 및 입법 추진

< IP-소송특위의 관할집중 방안 >

		(기존)		(확대)
대상 권리	민사	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·상표·품종보호권	⇨	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·품종보호권 + 영업비밀·산업기술·부정경쟁행위 ·반도체배치설계권 등
	형사	-		
운영 형태	민사	(1심) 6대 지법*+서울중앙 병존관할 (2심) 특허법원	⇨	(1심) 6대 지법 + 서울중앙·대전 병존관할 (2심) 특허법원
	형사	일반적인 형사 토지관할		(1심) 토지관할 + 서울중앙·대전 병존관할 (2심) 특허법원

* 6대 지법 : 서울중앙·수원·대전·대구·광주·부산

□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

○ 영업비밀 침해 등 **기술유출 사건의 손해액 산정**을 목적으로 하는 **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평가모델 개발** 추진('25.上)

  *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원·검찰·국정원과 협력하여 실증연구 및 평가모델 고도화

2.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 조성

□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채용·이직처 확대

○ (심사관 채용) **민간 R&D 경력자·퇴직자**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, 이차전지 등 **국가전략기술** 분야 **특허심사관 채용**(135명, '24~'25.上)

* 반도체 분야 심사관 37명 채용完('24.1), 이차전지 분야 심사관 38명 채용完('24.8)

* 바이오(22명), 헬스케어(13명), 첨단로봇(16명), 인공지능(9명) 분야 특허심사관 채용(총 60명) 추진 : 공고(9월) → 서류·면접(11~12월) → 임용('25.上)

○ (현장교수 채용) **우수 숙련기술인**을 **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**로 선정(100여명 추가, '24.下)하여 **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전수**(고용부)

□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연구자 지원

○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인 **직무발명제도 개선 및 확산** 지속추진

- (제도 개선)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**법적 근거 명확화, 기업의 재인증 부담 완화*** 등을 위한 발명진흥법 하위법령** 개정

*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한시 연장('24. 8.~'26. 8. 인증기업 대상)

** 발명진흥법 시행령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(고시)

- (안내서 발간) 표준규정·절차 등을 포함한 **제도 안내서** 발간·제공

* 기술혁신형 협·단체, 과총 등 산업계·과학기술계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 안내·교육

○ **직무발명 보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** 및 **부처간 협력 강화**

- (컨설팅 지원) 기업 내 **직무 발명 규정 마련** 및 **원활한 운영**을 위한 **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**('24년 250회 → '25년 380회 이상 목표)

- (인센티브 제공 협력) 세제개편 등 **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**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·논의

□ 우수연구자 포상을 통한 명예·사기 진작

○ 발명의날 기념식, 발명특허대전, 특허기술상 등 개최시 **포상 확대**

3. 기술보호·정보보안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

□ 영업비밀 보호 교육 및 인식제고 확대

○ (대학) 영업비밀보호·부정경쟁방지 내용이 포함된 **IP교육과정 운영**

- (IP중점대학) **영업비밀** 관련 **IP정규강좌** 운영 및 **IP교육 콘텐츠 개발, 지식재산 보호 특강** 등을 실시하여 **IP보호 인식** 제고

- (IP융합인재) **신산업 분야 학과에 기술 보호 관련 IP강좌 운영, IP소양교재·융합교재** 내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내용 명시

○ (CEO) **온라인 교육프로그램** 및 **벤처기업협회, 지역지식재산센터** 등과 **연계**한 중소·벤처기업 **CEO 대상 영업비밀 보호교육** 개설

○ (기업) **협력기관 확대**를 통해 **기업 대상 영업비밀 보호 현장교육 제공**

* (기존) 지역지식재산센터, 한국디스플레이·반도체협회, 한국무역협회, 특허정보원 → (확대)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서울경제진흥원 등

○ (일반인)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일반인, 공무원 등 대상 **지식재산** 실무교육과정에 「**영업비밀 보호제도**」 과목 편성 운영

○ (공동교육) **산업기술보호협회**와 **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간 협력**을 통해 **영업비밀·산업기술 보호 공동 교육** 추진

* 협회 회원사 등에 홍보하고, 영업비밀·국가핵심기술 보호방안 공동교육 실시('24.11)

□ 영업비밀 및 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

○ (영업비밀 보호) **변리사 자격 취득**을 위한 실무수습 집합교육內 **'부정경쟁방지·영업비밀보호'** 교육 확대·재편

○ (정보 보호) **정보보안 기술역량 확보**를 위한 **전문인력 양성**(과기부)

- (정보보호특성화대학) 사고대응, 보안 SW개발 등 **보안직무 중심**의 **정보보호 우수인재 양성 확대**(5개교 → 7개교)

- (융합보안대학원) **융합보안 핵심 전문인력 양성 확대**(10개교 → 12개교)

Ⅴ. 추진일정

추진과제	추진일정			
	'24年		'25年	
	3/4	4/4	上	下
[전략 1]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 강화				
1. 특허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				
-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유출 방첩 고도화	○	○	○	○
- 특허빅데이터 기반 국가핵심기술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	○	○	○	○
2. 기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				
- 기술전문성 기반 기술유출 수사 체계 구축		○	○	○
- 기술경찰 수사지원 시스템 확대 및 수사역량 강화			○	○
- 기술경찰 수사 정보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			○	○
3. 기술유출 수법 고도화·디지털화 대응 제도정비				
- 기술유출 수법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정비		○	○	○
-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보호 제도·지원 강화	○	○	○	○
- 기술·지재권 보호 규정의 통상협정 반영 확대	○	○	○	○
[전략 2]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				
1.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지원				
- 중소기업·대학·연구소 대상 기술보호 컨설팅·관리체계 구축 지원	○	○	○	○
-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후대응력 제고	○	○	○	○
2.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제도 강화				
-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도입 추진			○	○
-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대응 지원 제도 신설·확대			○	○
- 아이디어 탈취행위 행정조사 체계 강화	○	○		
3. 기술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체계 확대				
- 법원·검찰 사건 연계조정 체계 확대 및 홍보 강화		○	○	○
- 조정-집행간 사건 연계처리를 통한 조정 실효성 제고			○	○
[전략 3]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 및 여건 조성				
1. 기술유출·침해 관련 소송법제의 선진화				
-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		○	○	○
-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을 위한 법령 정비	○	○	○	○
-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			○	○
2.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 조성				
-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채용·이직처 확대	○	○	○	
-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연구자 지원	○	○	○	○
- 우수연구자 포상을 통한 명예·사기 진작	○	○	○	○
3. 기술보호·정보보안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				
- 영업비밀 보호 교육 및 인식제고 확대	○	○	○	○
- 영업비밀 및 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	○	○	○	○